중국의 강제인증제도(CCC Mark)

• 글 / 박윤수 사무관 제품안전과
parkys@ats.go.kr

기술표준원은 중국의 강제인증제도가 국내제품(CCEE마크)과 수입 제품(CCIB마크)으로 이원화 하여 운영해 오던 것을 2001. 12. 3자로 단일 강제인증제도(CCC마크)로 통합하여 2002. 5.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국 제도변경에 따른 혼선 및 대중국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CCC마크 대상 품목과 관련된 조합 및 업체 등의 수출입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2002. 4. 24. 기술표준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설명회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CC마크)를 전담하는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총공정사(1급 상당) Mr. Qiu Yiliang 등 7명을 특별 초청하였으며, 이들이 사용한 설명회 자료를 요약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중국의 강제인증제도가 국내제품(CCEE마크)과 수입제품(CCIB마크)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해 오던 것을 2001. 12. 3자로 단일 강제인증제도(CCC 마크)로 통합하여 2002. 5. 1부터 시행하게 된 추진배경은

- ○ 중국이 WTO가입에 따른 의무이행
- ○ 중국이 시장경제로 발전하기 위한 수요에 부합하며 경제와 무역 발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
- ○ 내부관리체계를 갖추고, 중국의 강제성 상품인증제도를 규범화시키기 위함

Ⅰ. 중국이 새로운 강제성 상품인증제도를 수립하게 된 기본 원칙

- ○ 기존의 두 가지 제도를 하나로 통합
- ○ 네 가지 통일 : 기술규범, 기준, 합격 평가절차를 통일, 목록통일, 마크통일, 비용기준 통일
- ○ 국제사회에서 통행되는 원칙 준수

인증제도의 수립과 운영, 인증/테스트/검사기관의 운영, 인증실시 규범 절차는 ISO/IEC 국제기준을 따르며, 인증에 사용되는 기준은 대부분 국제기준을 근거로 함

Ⅱ. 새로운 강제성 상품인증제도의 기본 구조

1. 정부 건립(시장규칙 확립, 무역, 경제발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
2. 지정된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제도 실시, 인증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짐
3. 지정된 기관은 강제성 인증마크와 심사허가 사용

방안 배포
4. 생산자, 소비자와 수입업자, 서비스 종사자는 생산, 판매, 수입, 이용상품에 대해 책임을 짐
5. 지방 품질검사기관에서는 〈목록〉에서 열거한 상품에 대한 감독 실시

Ⅲ. 중국의 강제성 상품인증제도 문헌 체계

1. 법률, 법규
○ 중국인민공화국 상품품질법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검사법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 조례
○ 중화인민공화국 상품품질인증관리 조례

2. 규 칙
○ 강제성 상품인증관리규정

3. 규범 문헌
○ 강제성 상품인증마크 관리방법
○ 제 1 강제성 상품인증 실시 상품목록
○ 강제성 상품의 인증실시규칙(47부)
○ 강제성 상품 인증비용 규정
○ 강제성 상품 인증제도 실시일정에 관한 규정

Ⅳ. 강제성 상품인증제도 조직보장체계 (관리와 시행기관)

1. 국가품질 감독검사검역 총국(AQSIQ)

○ 국가 강제성 상품인증제도와 규칙 제정
○ 〈목록〉 심사, 허가 및 국가인증허가 감독관리위원회(CNCA)와 공동 발표

2. 국가인증허가 감독관리위원회(CNCA)

국무원으로부터 강제성 상품인증제도의 수립, 조직운영, 시행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책임질 권한을 부여받음

〈 주요 업무 내용 〉
○ 목록초안작성, 조정 및 AQSIQ와 공동으로 대외발표
○ 목록상품 인증 실시규정 지정 발표
○ 인증마크 제정과 발표, 인증증서의 요구사항 확정
○ 인증임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테스트기관, 검사기관, 인증마크 배포기관 지정
○ 인증획득상품 및 관련 기업 리스트 발표
○ 지방품질검사기관이 강제성인증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
○ 특수용도상품에 대한 심사비준부문에서는 강제성 인증사항을 제외
○ 강제성 상품인증에 대한 기소, 제소 수리

3. 지방품질기술 감독기관과 지방출입국 검역기관 (약칭 지방품질검사기관)

국가인증허가감독관리위원회의 지도와 계획에 따라 지방품질검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감독 조사업무 실시

○ 관할지역내의 목록상품에 대해 감독실시, 감독 중점 사항 : 아직 인증이나 인증마크를 부여받지 못한 상품 : 위조 변조된 인증 마크상품과 소비자가 신고한 상품. 목록상품 중에서 아직 인증을 얻지 못한 상품이 본 관할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전면 금지
○ 강제성 상품인증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실시. 강제성 상품 인증 규정에 위배된 상품의 생산자, 중개업자, 수입업자가 주요 조사대상. 구체적인 위법사항은 〈강제성 상품의 인증 관리 제도〉의 처벌조항에 근거해서 처리함
○ 감독조사처리과정 중에서 인증기관, 테스트기관, 검사기관, 인증자가 위법 행위를 발견했을 시는 CNCA에 보고함. CNCA는 조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고, 지방 검사기관과 공조하며, 경제관

련 처벌은 인증허가감독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성 지방검사기관에서 집행함

4. 인증 기관 지정(CNCA에서 지정)

○ 상품의 강제성 인증업무 시행주체
- 인증 실시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상품과 관련된 강제성 인증업무 실시
- 인증을 획득한 상품과 유관기업에 강제성 상품인증증서 발급
- 인증을 확보한 상품과 공장을 대상으로 추적검사를 실시
- 인증증서 일시정지, 취소, 파기
- 유관부서는 인증상품과 인증신청인의 기소, 제소 관련 사안 처리

○ 인증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CNCA에서 지정한 테스트, 검사기관이 인증기관의 위임을 받아 인증상품의 테스트 보고서, 인증 상품 제조공장의 공장심사보고서 제공

○ 인증기관은 강제성 상품인증증서와 관련된 책임을 짐(생산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생산, 수입, 상품판매에 대해 책임지고, 인증을 획득했다고 해도 책임전가 금지)

5. 인증마크 배포 관리 기관을 설정

○ 시장감독, 위조방지. CNCA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인증마크를 일률적으로 배포 관리

〈 구체적인 업무 내용 〉

○ 기업이 제공한 인증증서에 근거해 인증마크 배포

○ 국가인증 허가 감독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표준화되지 않은 규격의 인증마크와 압축 등 기타 다른 방식으로 인증마크사용 심사

○ 지방 품질 검사기관을 위해 법 집행을 위한 정보 제공

Ⅴ. 중국의 강제성 상품인증마크

1. 중국 강제성 상품인증마크(CCC Mark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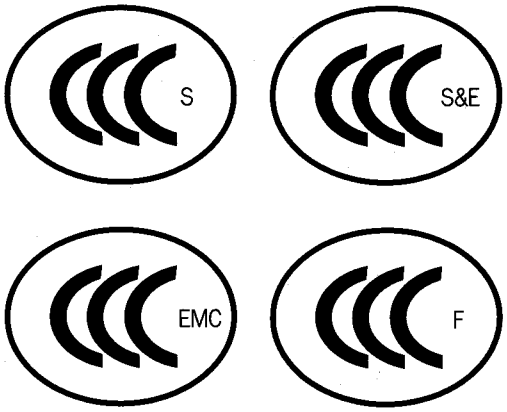

2. 명칭과 약칭

3. 성격 : 정부소유, 권한을 부여받음. 〈목록〉에 포함된 허가상품을 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한 표시

4. 상품의 적용 범위 : 지정기관에서 인증을 획득한 〈목록〉상품. 기타 다른 상품은 3C 표시를 사용 불가. 3C 마크는 기업, 관련 상품, 인증기관에 다른 상업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음

5. 기존의 마크 처리

○ 과도기가 완료되면 사용을 금지하고, 어느 부분에서도 이 인증 마크를 사용, 남에게 양도할 수 없음

○ 기존에 장성 마크로 〈목록〉 상품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전 배포 기관으로부터 인증증서를 갱신하고 새로운 마크를 사용 기일이 되면 인증기관에서 기업에 통지함

Ⅵ. 중국의 강제성 상품인증제도의 기본 내용

1. 대상 조정 / 강제성 인증 상품의 범위

○ 인류건강과 안전

○ 동식물의 안전

○ 환경보호

○ 공공안전
○ 국가안전

2 강제성 상품인증제도 수립의 원칙
○ 네가지 통일원칙
○ 기술장벽을 허물고 수출입무역에 유리

3. 강제성 상품인증제도의 핵심요구사항
강제성 상품인증 〈목록〉에 열거된 상품은 반드시 국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수여한 인증증서를 받고 인증마크를 사용한 이후에 상품, 수입, 경영부문에 적용할 수 있음

4. 강제성 상품인증제도의 선택가능
○ 모델 테스트
○ 제조현장에서 샘플테스트나 검사
○ 시장에서 샘플테스트와 검사
○ 기업 품질보증 체계 감사
○ 인증획득 후 추적 검사

5. 강제성 상품 인증 시행 규칙
○ 기본적으로 ISO/IEC지침28, 〈규정〉 제11조의 (범위, 신청단위, 샘플, 배송, 테스트, 심사, 결정, 변환, 확장, 마크, 감독) 요구사항 만족
○ 47부 배포, 132가지 상품 포함

6. 강제성 인증 상품의 기본 절차
가. 인증신청 및 수리
나. 샘플테스트
다. 초기공장심사
라. 인증결과평가 및 비준
마. 인증획득후의 감독

6.1 신 청
○ 인증신청 및 수리
- 신청인 : 생산자, 판매자, 수입업자
- 위탁인 : 신청인의 위탁
- 신청서, 기술자료, 샘플 제출
- 인증비용 납부
- 인증신청 수리, 신청은 1인당 1부

6.2 형식시험
○ 샘플 배송 원칙
○ 수량의 샘플 전달
○ 테스트기준과 기술요구사항
○ 테스트 항목
○ 테스트 방법

6.3 공장심사
○ 공장 품질보증
○ 상품의 일관성(브랜드, 상품 구조, 관건)
○ 테스트 인증 (필요시)
○ 시기 심사

6.4 결과 평가 및 비준
○ 샘플테스트, 공장심사결과 평가
○ 인증증서 수여 (통일된 양식)
- 인증기한 : 원칙적으로 90일 초과하지 않음

6.5 인증 획득후의 감독
○ 생산공장에 대한 수시 감독
○ 생산공장 감독내용: 품질보증을 위한 중복 조사. 인증상품의 일관성 조사. 샘플상품을 선택해서 테스트 기관에 배송(필요시)
○ 샘플 테스트(필요시 생산 공장, 시장 샘플 테스트)
○ 인증서의 연장, 일시 중단, 취소, 파기

7. 관련자 의무사항
7.1 신청인의 의무사항
○ 규정에 따라 신청관련 문건 제출

○ 인증일정 완성
○ 비용지불

7.2 생산자 판매자 수입업자 의무사항
○ 인증실시를 위한 필수조건 제공
○ 인증획득 상품이 지속적으로 원칙에 부합되도록 보장
○ 판매, 수입 상품이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기 위해 상품의 질 보장
○ 규정에 따른 마크 사용
○ 인증을 악용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불가
○ 인증서와 마크 양도, 매매금지
○ 품질 검사 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음

7.3 지정한 인증기관과 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의무사항
○ 규정에 따른 인증 실시
○ 인증 결과에 대한 책임
○ 상응하는 법률 책임이행
○ 인증신청인과 인증상품의 상업적인 기술에 대한 절대 비밀보장
○ 인증상품의 개발이나 자문서비스 제공 불가

Ⅶ. 제 1 그룹 강제성 인증상품 목록

1. 19가지 항목 분류 (9개 업종 : 전기·전자, 전신, 자동차와 오토바이, 안전 유리, 소방, 보안, 농기계, 라텍스 제품, 타이어)

2. 132 가지
○ 안전, EMC, 환경보호 요구사항
○ 기존에 안전품질의 허가를 받은 수입상품과 안전인증 강제성 감독관리상품을 기초로 함.

Ⅷ. 강제성 상품인증제도 실시 및 과도기 일정

1. 새로운 제도 실시와 이전 제도 폐지

새로운 제도는 2002년 5월 1일부터 실시,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전 제도는 폐지될 것임

2. 신, 구제도의 적용 상품과 감독관리
○ 2003년 5월 1일부터 모든 목록에 포함된 상품은 반드시 강제성 상품 인증증서와 마크를 보유해야만 출고, 수입, 판매를 할 수 있음
○ 2003년 5월 1일부터 중간업자, 수입업자는 목록 상품 중에서 새로운 인증서와 마크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을 구매, 수입 할 수 없음
2003년 4월 30일 이전에는 수입상품 안전품질 허가증과 CCIB마크 혹은 안전인증 합격증서 및 장성마크를 보유하고 있지만 판매하지 않는 목록상품에 대해서는 지방품질검사기관에 통지한 후에 감독을 받고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음
○ 2003년 5월 1일부터는 새로운 증서와 마크를 보유하고 사용해야 함
만약에 이전 마크를 찍은 상품이 있다면 반드시 새로운 마크로 교체해야만 출고, 수입, 판매를 할 수 있음
○ 2003년 4월 30일 이전에 이전 증서와 마크를 가지고 있는 목록상품은 이전 증서와 마크 그리고 새로운 마크와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출고, 수입, 판매를 할 수 있음
○ 2002년 5월 1일부터 이전 인증증서와 마크가 있지만 이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이전 증서, 마크가 더 이상 출고, 수입, 판매를 위한 조건사항이 되지 않음

3. 인증 신청 수리
○ 2002년 5월 1일부터 국가인증 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약칭 지정한 인증기관)을 통해 목록 상품의 새로운 증서와 새로운 마크 신청을 수리함
따라서, 이전의 증서와 마크 신청은 더 이상 수리

되지 않음

○ 2002년 4월 30일 이전에 이전의 증서와 마크를 가지고 있는 목록 상품은 이전 증서와 마크 사용 신청을 할 수 있음

4. 기타 사항 합격

○ 이미 신청은 했으나 이전의 증서도 발급 받지 못했고 이미 증서를 받은 목록상품은 신청인의 신청과 지정한 인증기관의 조건에 부합되는 여부가 확인되면 새로운 증서와 마크를 부여받을 수 있음

○ 상기한 새로운 증서와 마크를 부여받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에게 발생된 실질항목 내용과 새로운 제도에서 규정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지불함

아울러, 새롭게 적용되는 CCC마크에 대한 법률적 유권해석 사항, 기존 마크(CCEE마크 및 CCIB마크)에 대한 처리방법,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시장조사 등 사후관리제도 및 이에 대한 행정처분, 벌칙 등 참석자와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하여 입수한 자료를 정리하여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 공지사항에 중국 강제인증제도 설명회자료(CCC마크 대상품목 : 19개 품목군 132개 품목을 포함)와 함께 공개하였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다 구체적인 궁금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중국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CNCA)의 인터넷 홈페이지[www .aqsiq.gov.cn (사용가능) 또는 www.cnca. gov.cn(구축중)]를 직접 방문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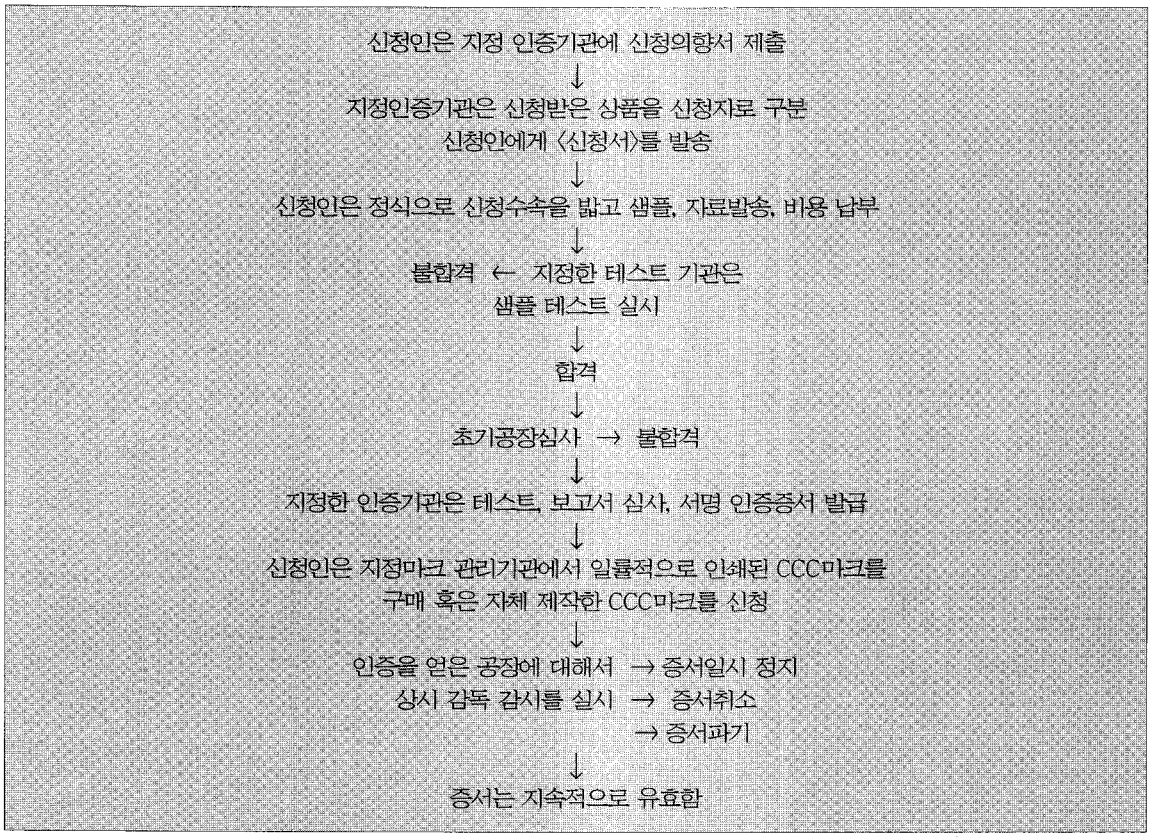
【표】 강제성 상품의 인증 과정